



농림축산식품부  
고용노동부

# 해명자료

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
보다 나은 정부

2020년 3월 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과장 이재식(044-201-2151), 사무관 왕희대(044-201-2170) / 제공일: 3월 3일(총 4매)  
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김부희(044-202-7210), 사무관 남현주(044-202-7223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외식업도 업종제한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가능

[서울경제 3.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-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외식업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, 농식품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고용유지조치 준수 등 관련사항을 외식 관련 단체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.
- 3월 3일 서울경제 A18면 <“하루매출 1만원” 숨넘어가는 TK 외식업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.



### 언론 보도내용

- 코로나19 우려가 지역 경제는 물론 외식업체에 직격탄이 되면서 '일 매출 1만원' 업장이 속출
- 이에 대구·경북 지역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외식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



##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

- 위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-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외식업도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.
  - 참고로,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보도참고자료 “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”을 통해 피해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  -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(월 최대 198만원)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.
  - 특히, 코로나19로 인해 조업(부분조업)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액·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‘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’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행했습니다(1.29).
-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고용유지조치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외식 관련 단체를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(2.25).
  - \*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에서 매뉴얼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

- ▶ (사업개요)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\*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  - \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- ▶ (특별 지원)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
  - \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□ 지원대상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\* 중 「고용보험법시행규칙」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
  - \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·의원 등) 등
    - 또한,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

□ 추진기간 : '20.1.29. ~ 「국가 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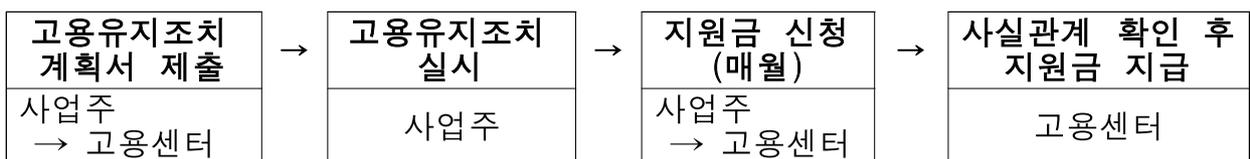
□ 지원조건

- 전체 근로시간의 20%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  - \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□ 구체적 지원내용

-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/3~1/2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  - \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▲우선지원대상기업 2/3, ▲그 외 1/2

□ 지원(신청)절차



□ 사업목적

- 매출액·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, 훈련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

□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

←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(기준달)의

1.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사업주
2.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%이상 감소
3.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,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%이상 감소
4.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
5.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·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
6.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
7.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
8. 당해 업종·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

□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

사업명	지원조건	지원수준
휴업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,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 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휴직	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(대규모기업 1/2~2/3) 을 지원 * 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
□ 사업집행절차

